

안동대학교대학원학칙

- 제정 2001. 2.14.(규정 제 375호)
- 1차 개정 2001.12.27.(규정 제 400호)
- 2차 개정 2002.12.13.(규정 제 427호)
- 3차 개정 2003. 4.14.(규정 제 436호)
- 4차 개정 2003.11.25.(규정 제 445호)
- 5차 개정 2004.12.24.(규정 제 461호)
- 6차 개정 2005. 3. 1.(규정 제 470호)
- 7차 개정 2005.12. 6.(규정 제 491호)
- 8차 개정 2006. 2.16.(규정 제 500호)
- 9차 개정 2006.10.24.(규정 제 531호)
- 10차 개정 2007. 9.17.(규정 제 552호)
- 11차 개정 2008. 9.25.(규정 제 587호)
- 12차 개정 2009. 5.18.(규정 제 627호)
- 13차 개정 2009.11. 9.(규정 제 648호)
- 14차 개정 2010. 2.19.(규정 제 669호)
- 15차 개정 2010.11.26.(규정 제 703호)
- 16차 개정 2011.11. 3.(규정 제 739호)
- 17차 개정 2011.12.29.(규정 제 749호)
- 18차 개정 2012.10.11.(규정 제 818호)
- 19차 개정 2013. 6.21.(규정 제 863호)
- 20차 개정 2013.10.31.(규정 제 877호)
- 21차 개정 2014.12.30.(규정 제 928호)
- 22차 개정 2015.11. 3.(규정 제 954호)
- 23차 개정 2016. 1.18.(규정 제 978호)
- 24차 개정 2016.10.10.(규정 제1041호)
- 25차 개정 2017. 2.24.(규정 제1075호)
- 26차 개정 2017. 9.29.(규정 제1102호)
- 27차 개정 2017.12.29.(규정 제1120호)
- 28차 개정 2018. 2.23.(규정 제1125호)
- 29차 개정 2018.12.17.(규정 제1158호)
- 30차 개정 2019. 2.11.(규정 제1166호)
- 31차 개정 2019. 8.19.(규정 제1214호)
- 32차 개정 2019.10.10.(규정 제1223호)
- 33차 개정 2020. 2.28.(규정 제1241호)
- 34차 개정 2020. 8.27.(규정 제1279호)
- 35차 개정 2021. 6.30.(규정 제1335호)

36차 개정 2021.10. 6.(규정 제1364호)
37차 개정 2022. 6.21. (규정 제1424호)
38차 개정 2022.10.14. (규정 제1449호)
39차 개정 2023. 2.28. (규정 제14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안동대학교의 교육이념, 교육지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 ① 안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에는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을 두며, 특수대학원으로 행정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을 둔다.(개정 2009.11.9., 2020.8.27.)

②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응용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개정 2010.11.26., 2020.8.27.)
2. 행정경영대학원: 사회과학 제 분야의 학문적인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수함과 동시에,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개정 2020.8.27.)
3. 교육대학원: 안동의 유구한 교육전통을 계승하고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역량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교육전문가를 재교육함을 목표로 한다.(개정 2020.8.27.)
4.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 문화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신설 2009.11.9.)

제2장 학위과정, 학과·전공 및 정원 [제목변경 2020.8.27.]

제3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 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6.10.23., 2011.12.29.)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③ 전문대학원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다.(신설 2009.11.9.)(개정 2013.10.31.)

[제목변경 2020.8.27.]

제3조의2(학위과정의 연계와 통합) ① 대학원에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석사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0.8.27.)

② 일반대학원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계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8.27.)

[본조신설 2011.12.29.] [제목변경 2020.8.27.]

제3조의3 삭제<2020.8.27.>

[본조신설 2012.10.11.]

제3조의4(협동과정) 학과(부)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2.6.21)

[본조신설 2015.11.3.]

제4조(학과·전공 및 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8.27.)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각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③ 제1항에 의거 설치된 학과 중 과정별로 3년 통산 신입생이 석사는 2명, 박사는 1명 이하일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해당학과를 폐과할 수 있다.(신설 2008.9.25., 개정 2015.11.3.)

[제목변경 2020.8.27.]

제4조의2(학과 설치 신청 자격)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과(전공)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되, 교육부에서 해당 기준을 고지한 당시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3.]

제3장 입학·재입학·편입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초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학과 출신자로 30학점 이상 전공학점인정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개정 2006.2.16., 2006.10.23., 2011.11.3. 2016.10.10. 2019.8.19.)
2. 박사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조교 제외)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 기간 휴직하고 입학할 수 있다.

③ 이 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중 2개 이상의 동일과정 또는 다른 과정을 동시에 입학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20.8.27.)

제7조(전형방법) 선발을 위한 고사 과목, 시기, 전형방법 등은 신입생 모집 시 각 대학원장이 총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다만, 대학원 신설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학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1.9.)

제8조(제출서류) ① 각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원서와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신입생 모집 시 총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지원학과) ①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지원자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지원자 중 교사자격증 희망자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부)·전공의 관련학과(전공)에 지원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학과의 인정여부는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10.23., 2010.2.19. 2019.8.19.)

② 박사과정 지원자는 석사과정에서 동일한 학과(전공)를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0.2.19.)

제10조(재입학) ①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며, 동일계열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② 재입학 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지도와 기타 학교생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8.27.)

제11조(편입학) ① 이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재적한 자로서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 및 절차 등은 매 모집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업·재학연한, 교과, 학점, 성적, 전공변경

제12조(수업연한) 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개정 2006.10.23.)

2. 특수대학원 : 2년 6월

3.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6월, 석·박사통합과정 4년 6월(신설 2009.11.9.)

(개정 2013.10.31., 2014.12.30. 2018.2.23., 2022.6.21)

②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6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개정 2006.10.23.)

2. 특수대학원 : 5년

3.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5년, 석·박사통합과정 9년

(신설 2009.11.9.)(개정 2013.10.31., 2014.12.30., 2022.6.21)

② 전과,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 재학기간을 통산한다.(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8.27.)

④ 장애학생의 경우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8.27.)

제14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1.3.)

②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0.11.26.)

제15조(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과정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3학점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 특수대학원 : 24학점 이상으로 하고, 매 학기 6학점(교육대학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행정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무논문 석사과정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9.25.)

3.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은 27학점(논문연구과목 포함 29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3학점(논문연구과목 포함 37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논문연구과목 포함 64학점) 이상으로 하고,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9.11.9.)(개정 2013.10.31., 2022.6.21)

② 선수과목 이수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3 이상인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학점으로 무논문 석사과정을 제외한 석사과정은 2학점,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제1항의 매 학기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료 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한다.(개정 2006.10.23.)

제16조(선수과목) ①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케 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학점은 제15조제1항의 과정별 이수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3.)

1. 대학원 과정의 전공과 하위과정의 전공이 상이할 경우(신설 2015.11.3.)

2. 전문석사학위 이수자가 학술박사학위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신설 2015.11.3.)

② 선수과목의 이수학점, 이수방법 등은 각 대학원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과정간의 학점인정) 학과장(전공주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 4학년은 석사과정의 교과목 학점을 졸업학점과 관계없이 매 학기 3학점 이내 취득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11.3.)

제18조(학점의 교류) 학생이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26.)

제19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	95 ~ 100	4.5
A ⁰	90 ~ 94	4.0
B ⁺	85 ~ 89	3.5
B ⁰	80 ~ 84	3.0
C ⁺	75 ~ 79	2.5
C ⁰	70 ~ 74	2.0
F	69 이하	0

②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교과목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재이수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성적은 삭제한다.(신설 2015.11.3.)
제20조(이수 인정학점) 각 대학원의 성적은 C⁰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21조(등록) ①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간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22조(휴학) ① 학생은 창업,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6.21.)

②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실시하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전학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임신 · 출산 · 육아의 사유로 최대 3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신설 2013.6.21.)
(개정 2020.8.27.)

제23조(복학)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초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4조(제적, 퇴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2. 등록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
3. 재학연한 내에 석·박사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②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갖추어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전공변경 및 전과)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원 내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할 수 있으며, 전과 및 전공을 변경한 자의 기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변경된 학과 및 전공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개정 2017.12.29.)

[제목변경 2017.12.29.]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26조(수료) ① 학위과정의 수료인정은 제12조의 수업연한과 제15조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무논문 석사과정은 B⁺이상으로 한다.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각 대학원별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석사과정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6.10.23.)

제26조의2(수료자의 등록)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논문 준비 등을 위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9.11.9.)

제27조(학위수여) ① 제26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위청구 자격시험,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으로, 행정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는 무논문으로, 전문대학원은 실무프로젝트 또는 학위논문 대체 실적으로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9.25., 2014.12.30., 2021.6.30., 2022.6.21)

② 일반대학원에는 학술학위,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는 전문학위를 수여하며, 학과·전공별 학위의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학위 종별은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1.9., 2021.10.6.)

③ 학위청구 자격시험,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기준,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8.9.25., 2022.6.21)

④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6.10.23.)

제27조의2(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9.25.)(개정 2021.6.30.)

[제목변경 2021.6.30.]

제28조(명예박사학위)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발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학위수여의 취소)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3.)

제7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30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연구생) ①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과목 및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생은 연구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각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하거나 연구를 수행한다.

④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학생의 징계) 각 대학원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제34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35조(직제) ① 각 대학원의 직제는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다.(개정 2010.2.19.)

② 각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학과·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이때 교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겸임할 수 있다.

제36조(학과장·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는 각 학과·전공마다 학과장·전공주임을 두며, 각 세부전공마다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1.9.)

② 학과장·전공주임은 각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제의 지정,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09.11.9.)

제37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21.10.6.)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0.8.27.)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0.8.27.)

1. 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8.27.)

제38조 삭제<2020.8.27.>

제39조 삭제<2020.8.27.>

제40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할 사항과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37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9.5.18.)(개정 2020.8.27.)

1. 입학전형과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일반적인 학사운영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학사운영 사항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개정 2009.5.18.)

제10장 보칙

제41조(세부운영규정) 이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42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200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별표 1] 중 정원 및 학과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동대학교대학원학칙, 안동대학교행정경영대학원학칙, 안동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학위수여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안동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안동대학교행정경영대학원학위수여규정, 안동대학교교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은 이 학칙에 의하여 각각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12.2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별표 1] 중 정원 및 학과는 2002.3.1.부터 시행 한다.

부칙(2002.1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학칙은 2003.3.1.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은 공포한 날 기준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4.14.)

(시행일)이 대학원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25.)

(시행일)이 대학원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24.)

(시행일)이 대학원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일반대학원 일반과정의 농학석사-식품생명공학과, 공학석사-기계정보공학과 및 박사 학과간협동과정의 이학박사-식품영양학·식품생명공학과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3.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또는 통합되는 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석사과정) 학생은 무역학과에, 기계정보공학과(석사과정) 학생은 통합 학과인 기계공학과에, 행정경영대학원 산업경제학과 및 국제지역경제학과의 학생은 통합 학과인 경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6.2.16.)

(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별표 1] 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과정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12조 제1항의 제1호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당시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은 제12조 제1항의 제1호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제3조(통합되는 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통합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생명자원과학과(=농생물학과+자원식물학과)도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농생물학과와 자원식물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년의 재학생이 있는 학과로 한다.

부칙(2007.9.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별표 1] 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중 제4조제1항의 [별표1]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중 제4조제1항의 별표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행정경영대학원의 지방행정학과 학생은 자치행정학과에, 지역정책학과 학생은 복지정책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26조의2는 동조의 시행일 이전의 수료자에

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과정 지원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교육대학원의 한문교육전공, 교육공학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에 재적 중인 자와 수료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18호, 2012.10.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63호, 2013.6.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77호, 2013.10.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928호, 2014.12.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954호, 2015.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 및 제19조제3항의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입생 충원율 저조에 따른 학과 폐지에 대한 경과 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학칙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하여 학과를 폐지할 경우에는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신입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규정 제978호, 2016.1.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41호,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자원과학과 재학생과 수료생은 종전의 학칙을 따르고, 생명자원과학과 휴학생과 제적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세부전공에 따라 식물외과학과와 생약자원과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학칙에 따라 폐지된 농생물학과와 자원식물학과의 휴학생과 제적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식물외과학과와 생약자원과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바이오전자공학과 학생은 바이오 ICT융합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075호,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정보통신교육전공의 재적생과 수료생은 종전의 학칙을 따르고, 학과 명칭이 변경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정보전자교육전공의 입학생은 개정 학칙을 따른다.

부칙(규정 제1102호, 2017.9.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20호, 2017.12.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25호, 2018.2.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학칙은 공포일 당시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158호, 2018.12.17.)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66호, 2019.2.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14호, 2019.8.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활환경복지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생활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223호, 2019.10.10.)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41호, 2020.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27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중등록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부칙(규정 제1335호, 2021.6.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개정학칙은 2021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1의 개정학칙 중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학과의 명칭 변경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364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공학과 재적생과 수료생은 종전의 학칙을 따르고, 학과 명칭이 변경된 AI융합학과의 입학생은 개정 학칙을 따른다.

부칙(규정 제1424호, 2022.6.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대학원 수업연한 변경)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학칙을 따른다.

제3조(석·박사통합과정) 제12조제1항제3호의 전문대학원에 두는 석·박사통합과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449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전공) 신설·폐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으로 일반과정의 국민윤리과, 물리학과, 학과간 협동과정의 화학신소재융합학과, 학연산 협동과정의 생명자원과 학부가 폐지되더라도 동 학과 및 학부는 재적생이 모두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 학칙의 학과간 협동과정 백신공학과와 식품영양학·식품생명공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 및 수료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 학칙의 학과간 협동과정 백신공학과, 식품영양학·식품생명공학과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 본다.

③ 종전 학칙의 화학과와 AI융합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 및 수료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 학칙의 화학과, AI융합학과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 본다. 단 2023학년도 1학기 이후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에는 화학생명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465호, 2023.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11.9., 2011.11.3., 2012.10.11., 2013.6.21., 2013.10.31., 2015.11.3., 2016.1.18., 2016.10.10., 2017.2.24., 2017.9.29., 2017.12.29., 2018.12.17., 2019.2.11., 2019.8.19., 2019.10.10., 2020.2.28., 2020.8.27., 2021.6.30., 2021.10.6., 2022.10.14., 2023.2.28.)

각 대학원별 학과 · 전공 및 입학정원

1. 일반대학원

가. 총괄(※과정별 총정원제)

구분	과정	학과수								입학정원								비고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석사 학위 과정	일반과정	41	40	40	40	38	38	38	36	139	151	151	151	151	151	151	151	
	협동 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4	6	6	6	5	4	4									2
		학연산 협동과정	5	6	5	5	4	4	4									2
	합계	50	52	51	51	47	46	46	40									
박사 학위 과정	일반과정	35	33	31	30	28	28	28	25	58	52	52	52	52	52	52		
	협동 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3	5	5	5	4	3	3								2	
		학연산 협동과정	5	6	5	5	4	4	4								2	
	합계	43	44	41	40	36	35	35	29									

나. 세부내역

1) 일반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
	한문학과	한문학과	○
	민속학과	민속학과	-
	동양철학과	동양철학과	-
	사학과	사학과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
	법학과	법학과	-
	행정학과	행정학과	-
	경제학과	경제학과	○
	무역학과	무역학과	-
경영학과	경영학과	-	
자연계열	교육공학과	교육공학과	-
	수학과	수학과	-
	생물학과	생물학과	○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
	의류학과	의류학과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
	생활복지학과	-	-
	생약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
	식품의학과	식품의학과	○
원예육종학과	원예육종학과	-	
공학계열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백신공학과	백신공학과	○
	간호학과	-	-
	정밀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
	장의소프트웨어학과	장의소프트웨어학과	○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
	미래자동차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
	전자공학과	-	-
예체능계열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
	토목환경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
	건축공학과	-	-
	화학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
	음악과	음악과	-
	미술학	-	-
	체육학	체육학	○

※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 및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있으며, 학생 선발시 통합과정으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함.

2) 협동과정

가) 학과간 협동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참여학과
공학계열	바이오ICT융합공학과	바이오ICT융합공학과	○	전기전자교육과, 스마트센서공학과, 생명과학과, 산림과학과, 식물의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	기계로봇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신소재공학부,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지식재산융합학과	-	-	자동차공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생명과학과, 백신생명공학과, 전기·신소재공학부,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영양학과, 공연예술음악과, 융합콘텐츠학과
	지진방재공학과	지진방재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 기계교육과

나) 학·연·산 협동과정

구분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협약기관
학·연 협동과정	인문사회계열	고전국역학과	고전국역학과	○	국학진흥원
	자연계열	산림자원융합학과	산림자원융합학과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	한국재료연구원
		ICT융합공학과	ICT융합공학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 및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있으며, 학생 선발시 통합과정으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함.

2. 특수대학원

가. 행정경영대학원

학위과정	정원	학위종별	학과	전공	비고
석사 학위 과정	50	관광학석사(문화관광학)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학	
		법학석사(법학)	법학과	법학	
		행정학석사(자치행정학)	자치행정학과	자치행정학	
		행정학석사(복지정책학)	복지정책학과	복지정책학	
		경제학석사(경제학)	경제학과	경제학	
		경영학석사(경영학)	경영학과	경영학	
합계	50		6개 학과		

나. 교육대학원

학위과정	정원	학위종별	학과	전공	비고
석사 학위 과정	92명 (양성:35명, 재교육:57명)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양성과정> ○정교사자격증 취득과정 <재교육과정> ○부전공자격 취득과정 (중등학교 현직교사) ○석사학위 취득과정
		교육학석사(역사교육)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윤리교육)	교육학과	윤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영어교육)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수학교육)	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교육학과	컴퓨터교육전공	
		교육학석사(정보전자교육)	교육학과	정보전자교육전공	
		교육학석사(기계교육)	교육학과	기계교육전공	
		교육학석사(영양교육)	교육학과	영양교육전공	
		교육학석사(미술교육)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체육교육)	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한문교육)	교육학과	한문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교육학)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교육학석사(물리교육)	교육학과	물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화학교육)	교육학과	화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생물교육)	교육학과	생물교육전공	
		*교육학석사(AI융합교육)	교육학과	AI융합교육전공	

* 표시 전공은 재교육과정만 운영

3. 전문대학원

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정원	학위종별	학과	비고
석사학위과정	20	융합콘텐츠학석사	융합콘텐츠학과	
박사학위과정	10	융합콘텐츠학박사	융합콘텐츠학과	2014년 신설
합계	30		석사 1개 학과, 박사 1개 학과	